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윤 용 중

나. 생 년 월 일: 1961.01.25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 정해 본사

(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7 에코테라스 2층 205호)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3월

나. 효력발생일: 2024.01.15. ~ 2024.04.14.

다. 사 유: 감정평가과정에서 개별요인의 비교, 획지조건 등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을 위반

2024년 1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